

4차 산업혁명 사회의 정온한환경을 위한 혁신인재

교육연구단 운영규정

제정 2020.12.

제1조(목적) 이 지침은 「4단계 BK21사업」의 지원을 받는 "4차 산업혁명 사회의 정온한 환경을 위한 혁신인재 교육연구단 (이하 "교육연구단")"의 사업목표 달성과 효율적인 사업추진과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기간) ① 사업기간은 7년으로, 그 기간은 2020년 9월 1일부터 2027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연차 별 사업기간은 매년도 3월 1일부터 다음연도 2월말까지로 한다. 단 1차년도의 경우 2020년 9월 1일부터 다음연도 2월말까지로 하며, 마지막 차년도는 2027년 3월1일부터 2027년 8월 말까지로 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본 규정은 본 교육연구단 모든 참여자에게 적용한다

- ② 이 규정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다음의 규정을 따른다
가. 4단계 BK21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훈령
나. 4단계 BK21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지침
다. 4단계 BK21사업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
라. 포항공과대학교 연구비 관리지침

제4조(의결절차) 참여대학원생의 지원 및 사업비 집행과 관련된 주요사항은 본 운영규정 제3조 각항에서 정하는 규정을 따르되, 교육연구단 운영위원회 또는 교육연구단장이 최종 결정한다.

제5조(교육연구단장) 교육연구단을 대표하고, 운영위원회 및 자체평가위원회를 소집할 권한을 가지며 또한 최종 결정권을 가진다.

제6조(운영위원회) ① 사업운영성과를 평가하고 평가결과 분석을 통한 효과적인 사업운영을 위하여 교육연구단 내 운영위원회(외부기관 협력, 우수교원 선정, 입시·교육, 연구·국제화,

안전·윤리)를 둔다.

- ② 운영위원회는 참여교수 중 3명 내외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교육연구단장이 되며, 외부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제7조(참여교수) ① 교육연구단에 참여하는 교수는 「고등교육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전임교원 중 강사를 제외한 교원(이하 "교수"라 한다)으로 한다. 혁신인재 양성사업의 경우 타 학과 소속 전임 교원도 참여가 가능하나 겸임 발령이 필요하며, 그 밖의 참여교수에 관한 세부 사항은 전문기관의 장이 따로 정한다.

-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수는 교육연구단에 참여할 수 없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교수 중 해당 기간 동안 학생지도(논문지도 등) 등의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교육연구단의 장 또는 총장의 허가 받은 경우에는 교육연구단에 참여할 수 있다.
가. 휴직, 국내외 기관 파견 중인 교수
나. 연구년 또는 안식년 중이거나, 6개월 이상 장기 해외출장 중에 있는 교수
다. 4단계BK21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훈령(제353호) 제28조에 따른 연구 참여 제한 기간 내에 있는 교수
라. 기타 정상적인 연구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 ③ 교육연구단에서 참여교수를 교체하거나 그 수를 늘리는 것은 가능하나, 사업 신청 시 기준 (중간평가 이후는 재선정신청서 기준)으로 참여교수의 수를 줄일 수 없다.
④ 참여교수를 교체하거나 그 수를 늘릴 경우, 교육연구단의 장은 해당 교수의 자격요건을 검증하여야 하며, 변경사유와 해당 교수의 연구업적을 첨부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⑤ 교육연구단의 참여교수 수가 신청 시를 기준으로 줄어든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신규 교수 임용 등을 통해 신청 당시의 참여 교수 규모를 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 전문기관의 장은 해당 교육연구단과 협약 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교수의 갑작스러운 사망·퇴직·이직 등 예측할 수 없는 사유로 부득이하게 6개월 이내 참여교수 충원이 어려운 경우 전문기관 장의 승인을 통해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⑥ 교육연구단이 제3항에 따라 참여교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참여교수 변경에 따른 연구업적 목록을 첨부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참여교수의 사망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후에 승인을 받을 수 있다.

- ⑦ 참여교수의 성과급의 경우 별도의 규정을 두어 당해 연도 사업기준 실적에 따라 차등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기준은 별도의 규정을 두어 지원하도록 한다.

제8조(참여교수의 선정 및 교체) ① 교육연구단의 장은 참여교수의 변경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교육연구단 자체운영규정을 제정하고 운영할 수 있다.

- ② 본 교육연구단에 참여하는 교수는 환경공학부 전임교원으로 하며, 최근 3년간 상위 10%이내 SCI 논문 5편이상 게재를 원칙으로 하며, 총 연구업적을 운영위원회에서 평가 후 선정한다. 신임 교수인 경우 연구정착기간을 감안해서 부임 후 3년간의 유예기간을 주고,

그 이후에는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한다.

- ③ 참여교수의 교체기준은 교육연구단 선정 시 기준인 참여교수 기본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교육연구단이 단계별로 정한 교육, 연구, 산학협력, 국제화 및 봉사부문을 평가하여 기준에 못 미칠 때에는 교육연구단 운영위원회 결정에 따라 참여교수를 교체한다.

제9조(참여대학원생 및 지원대학원생) ① 참여대학원생은 사업에 참여하는 교수의 지도학생 중 전일제로 등록한 석·박사과정 대학원생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입학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석사과정생

나. 입학한 지 4년이 지나지 않은 박사과정생 및 박사 수료생

다. 입학한 지 6년이 지나지 않은 석·박사통합과정생 및 석·박사통합과정 수료생
단, 타 기관에 소속되어 있거나 취업 등으로 소속 변경이 일어날 경우는 전일제 대학원생에서 제외된다.

- ② 제1항 각호의 기간을 기산 할 때에는 휴학 및 군복무 기간을 제외한다. 다만, 전문연구요원의 경우 교육연구단 소속으로 근무하는 경우 기간 산정에서 제외하지 않는다.

- ③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원생은 매주 40시간 이상 연구 또는 수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④ 참여대학원생 중 연구장학금을 지급받는 학생은 지원대학원생이라 하며, 지원대학원생은 참여교수별 실적을 고려하여 선발하며, 참여대학원생의 70%이내에서 연구실적과 성적에 따라 장학금을 배정할 수 있다.

- ⑤ 지원대학원생은 학기별로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아 지원대학원생 선발 지침에 의해 매학기가 시작하기 전인 2월과 8월중에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교육연구단장이 선정한다.

가. 당해연도 3월, 9월 신입생은 예외적으로 연구실적 상관없이 우선 지원할 수 있다.

나. 재학생 기준: 직전학기 성적 3.3/4.3 이상으로, 주40시간 이상 연구 또는 수업에 전념하는 자. 단, 연구 및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육연구단장의 허가를 받아 다른 연구에 참여하여 추가 연구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다. 내국인 대학원생 우선 선발을 원칙으로 하되, 외국인 대학원생도 지원대학원생 규정에 맞게 지원이 가능하며, 외국인 지원대학원생은 교육연구단장님 또는 운영위원회에서 최종결정한다.

- ⑥ 연구장학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지급한다.

가. 입학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석사과정생 또는 입학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석·박사통합과정생: 월70만원 이상~180만원 미만

나. 입학한 지 4년이 지나지 않은 박사과정생 또는 입학한 지 6년이 지나지 않은 석·박사통합과정생: 월130만원 이상~ 250만원 미만

다. 입학한 지 4년이 지나지 않은 박사 수료생 또는 입학한 지 6년이 지나지 않은 석·박사통합과정 수료생: 월100만원 이상~250만원 미만

- ⑦ 참여대학원생의 변경(추가 및 교체)은 아래 각 호의 경우에 대학원생의 지도교수와 교육연구단장의 협의 하에 변경할 수 있다.

가. 참여대학원생이 제적, 휴학, 해외파견, 논문연구 주제 변경 등의 이유로 정상적인 사업 참여가 불가능한 경우

나. 교육연구단의 연구 진행상 참여대학원생의 수를 늘리는 것이 필요할 경우 새로운 대학원생을 추가할 수 있다.

제10조(신진연구인력) ① 신진연구인력을 채용하려는 때에는 급여, 퇴직금 등 근로 조건, 신진연구인력의 의무와 책임, 계약해지조건 등을 명시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박사후연구원의 채용 및 지원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박사후연구원은 소속 사업단에서 연구에 전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박사후연구원에게는 사업비에서 월 300만원 이상을 인건비로 지원하여야 한다.

- 다. 사업비 지원을 받는 박사후과정생 중 자교 박사학위 취득자는 3분의 2 이내로 한다. 다만 지원인원이 1명이거나, 박사후과정생이 자교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그 박사학위 전공분야가 사업단에서 연구에 전념할 전공분야와 다른 경우에는 자교 박사학위 취득자로 계산하지 아니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계약교수의 채용 및 지원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계약교수의 채용자격은 박사학위 취득 후 산업체, 교육 또는 연구 경력이 1년 이상인 자로 한다.

나. 계약교수는 소속 사업단에서 교육·연구에 전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 계약교수에게는 월 300만원 이상을 인건비로 지원하여야 한다.

라. 사업비 지원을 받는 계약교수 중 자교 학사학위 취득자의 비율과 자교 박사학위 취득자의 비율이 각각 3분의 2 이내로 한다. 다만 지원 인원이 1명이거나, 계약교수가 자교 학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그 학사학위 또는 박사학위 전공분야가 사업단에서 교육·연구에 전념할 전공분야와 다른 경우에는 자교 학사학위 또는 박사학위 취득자로 계산하지 아니한다.

- ④ 신진연구인력의 계약기간은 1년 이상 2년 이내(1차년도, 8차년도는 6개월 이상 2년 이내)로 하되, 최대 4년의 범위 내에서 계약 기간을 갱신 또는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박사후과정생 중 '리서치 펠로우'로 채용되는 경우 계약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최대 4년은 초과할 수 없다.

- ⑤ 신진연구인력은 사업단의 교육·연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교육연구단장 및 총장의 허가를 받아 다른 연구에 참여하여 연구비 등을 지원받거나 학내·외, 주·야를 불문하고 학기당 주 6시간 이내의 시간강의를 할 수 있다.

- ⑥ 제5항에서 의미하는 '주 6시간 이내 강의'에서 말하는 시간은 출강시간을 의미하며(진료 등 금지) 사이버 강의, 평생교육원 강의도 포함한다.

- ⑦ 신진연구인력은 매 사업연도마다 일정한 수준의 연구업적 산출을 원칙으로 하며, 임용기간동안 주저자인 SCI 논문(관련분야 상위 20%이내)을 1편 이상 게재하도록 한다.

제11조(산학협력 전담인력) ① 교육연구단의 사업목적 달성 및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산학협력 전담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

- ② 산학협력 전담인력을 채용하려는 때에는 급여·퇴직금 등 근로 조건, 의무와 책임, 계약해지조건 등을 명시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 ③ 사업비 지원을 받는 산학협력 전담인력 채용 시 중 자교 학사학위 취득자의 비율과 자교 박사학위 취득자의 비율이 각각 3분의 2 이내로 한다. 다만 지원 인원이 3명미만이거나, 산학협력 전담인력이 자교 학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그 학사학위 또는 박사학위 전공분야가 교육연구단에서 교육·실습 지원 등에 전념할 전공분야와 다른 경우에는 자교 학사학위 또는 박사학위 취득자로 계산하지 아니한다.
- ④ 산학협력 전담인력의 계약기간은 1년 이상 2년 이내(1차년도, 8차년도는 6개월이상 2년 이내)로 하되, 최대 4년의 범위 내에서 계약 기간을 갱신 또는 연장할 수 있다.
- ⑤ 산학협력 전담인력은 교육연구단의 목적에 맞는 외부 협동기관(산업체, 지자체, 연구소, 공공기관 등)의 섭외 및 적격여부를 검토하며 교육연구단장이 최종 결정한다.
- ⑥ 참여대학원생의 산학협동연구, 현장실습 및 인턴쉽, 사업비 관리 등 외부협동기관의 전문지식과 직무경험을 제공받고 검증하는 등 교육연구단에 필요한 전반적인 산학협력 업무를 담당한다.

제12조(해외학자) ① 교육연구단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해외학자를 초빙하거나 활용할 수 있다.

- ② 해외학자는 해외 소재 대학, 연구소, 기업체 소속의 교수 또는 연구원이어야 한다.
- ③ 해외학자가 사업기간 중 국내 대학으로 이직하거나 전임으로 임용되는 경우 임용시점 이후에는 해외학자 초빙 대상에 포함할 수 없으며 해외학자 초빙 관련 지원 경비를 집행할 수 없다.
- ④ 해외석학 초빙 지원은 해외 대학의 저명한 교수 중 연구 경력이 5년 이상 된 자 중에서 단기(1개월 이내), 장기(6개월이내)로 초빙하며,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 ⑤ 대상자 선정 및 자문료는 해외석학 지명도와 교육연구단 사업추진내용과 연관성을 고려하여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13조(국제협력 지원) ① 연구업적이 뛰어난 참여대학원생을 우선으로 국제학술대회 참석 및 발표를 지원하며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 가. 국내학술대회 및 Workshop에서 연구결과를 발표하여 수상 경력이 있는 자
- 나. 기타 훌륭한 연구 성과가 있다고 운영위원회 및 교육연구단장이 판단하는 자
- 다. 지원 가능한 금액 범위 내에서 4단계 BK21사업 여비 규정에 준하여 지원
- 라. 장·단기연수는 별도의 규정으로 지원한다.

제14조(사업실적 및 성과의 관리) 사업 참여자(참여교수, 대학원생, 신진연구인력)는 자신이 참여하여 산출된 연구실적에 '4단계 BK21사업 4차 산업혁명 사회의 정온한 환경을 위한 혁신인재 교육연구단'에 의하여 지원받은 사실을 표시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업 운영경비 집행 세부 지침

1. 초청 세미나

- ① 지원 대상: BK참여교수가 초청하는 인사
- ② 세부 산출근거: 환경공학부 학과 내규에 의거 연사료 500,000원 정액지급.
체제비(교통비, 숙박비) 미지급함.
- ③ 회의비: 1인당/3만원지원, (최대 15명까지 지원/반드시 세미나 연사 참석)

2. 전문가 자문료

- ① 포항공과대학교 전문가 활용기준에 의거하여 1회 지원한도 500,000원.
- ② 국내·외 전문가를 활용 시 활용연구실에서는 교육연구단장 사전승인 후 집행.
- ③ 국외 전문가는 국내 전문가의 2배 이내에서 지급 가능.
- ④ 제출서류: 전문가초청 활용 계획서, 자문내용, 이력서, 통장사본, 신분증

3. 외부 위원 수당

- ① 지원 대상: 사업추진을 위해 교육연구단 내부운영규정상 개최되는 각종 위원회
- ② 지원 기준: 1인당 300,000원 지급, 체제비(교통비, 숙박비) 미지급.

4. 논문 게재료

- ① 지원 대상: 국제 Journal에 게재하는 논문의 논문게재비용을 지원한다.
- ② 지원기준: 국제 Journal에 게재시에는 편당 85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며,
4단계BK21사업으로 지원받음을 사사하여야 하며, 타 과제와 중복 사사표기시 4단계
BK21사업 교육, 연구 내용과의 연관내용을 기술하여 제출하여야 함.
- ※ 사사표기는 사업단명을 활용하여 자유롭게 작성 (사업단명 국문: 4차 산업혁명 사회의
정온한 환경을 위한 혁신인재 교육연구단 / 영문 : Human Resource Program for
Sustainable Environment in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Society)

5. 기술정보활동비

- 가. 국내학회, 세미나, 워크숍 등록비(1회성경비 한하여 집행, 연회비 지원불가)
- 나. 학회 발표 및 게재를 위한 논문교정비
- 다. 본 과제 연구활동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비

6. 참여교수 및 참여인원의 인센티브 지급기준

- ① 지원 기준: 각 참여교수의 해당년도 BK성과를 아래 기준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여 4단계
(표1 참조)등급으로 차등 지원하도록 운영.

② 참여교수의 성과기준

- 가. 논문: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로 해당분야 상위 10%이내 SCI 논문당 게재 및 게재 승인 1점 (최대 5점)
- 나. 국가 및 공공기관 연구과제 수주: 1억원 당 1점, 계약일 기준 (최대 5점)
- 다. 산학 연구과제 수주: 3,000만원 당 1점, 계약일 기준 (최대 5점)
- 라. 특허: 국내 등록 당 0.5점, 국외 등록 당 1점 (최대 5점)
- 마. 기술이전 2,000만원 당 1점, 계약일 기준 (최대 5점)
- 바. 기타: 교육연구단장은 위 항목 이외의 BK사업 특별 기여도에 따라 0~3점을 산정할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에서 최종 결정 후 시행한다.

표1. 참여교수 인센티브 지급 기준 및 지급액

구 분	지 급 기 준	지 급 액
참여교수 인센티브	최우수 등급 - 1명	3,500,000원
	우수 등급 - 2명	3,000,000원
	장려 등급 - 3명	2,500,000원
	보통 등급 - 4명	2,000,000원

- 1차년도, 8차년도는 지급액은 50%감액하여 지급.

7. 4단계 BK 대학원생 산학협력 우수 논문상

- ① 필요성 및 목적: 대학원생들의 외부 협동연구 및 우수 논문발표 유도 및 동기부여를 위한.
- ② 대상자: 참여대학원생
- ③ 선정인원 및 포상금: 해당연도 예산을 고려하여 4단계 BK21사업 운영위원회 결정함.
- ④ 선정기준: 본인신청 및 참여교수의 추천 받아, 연구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4단계
BK21사업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함.
- ⑤ 선정시기: 매년1월초
- ⑥ 지급시기: 매년2월중순경

국제협력 경비 지원 세부 지침

1. 단기 해외연수(15일 이내) 및 학회 참가 지원

- ① 국제적으로 권위 있는 학회가 주관하며 국제학술대회 인정기준(4개국 이상 참여, 총 구두발표논문 20건 이상, 총 구두발표논문 중 외국기관 소속 외국인 50% 이상(다만, 국내 개최시에는 3분의 1이상)을 충족하는 학술회의에 참가하는 논문발표 참여 대학원생, 신진연구인력, 논문 발표 참여대학원생의 지도교수의 학술대회 참석을 지원한다.
- ② 해외기관으로의 단기 연수는 참여대학원생이 MOU체결 기관 등에서 실시되는 공식 교육과정 참여, 현지 연구 수행 시 지원이 가능하며, 참여교수는 연수 대상 학생의 지도교수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벤치마킹 대학과의 워크숍은 예산운영계획서에 기재된 경우에 한하여 허용한다.
- ③ 국제(학술)대회 당 발표 논문별 저자 중 각 3인 이내의 참여대학원생, 신진연구인력, 산학협력전담인력에 대하여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참여교수는 지도하고 있는 참여대학원생이 발표논문의 저자로서 국제학술대회에 참여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국제 전시회의 경우 단순 참가는 지원할 수 없으며, 참여교수는 지도하고 있는 참여대학원생이 국제 전시회 출품·전시·시연하는 경우 1인에 한하여 동반 가능하다.
- ④ 지원금액은 항공료의 실제 소요 금액 및 체제비로, 항공료는 영수증 청구 금액만큼, 체제비는 본교 여비규정에 준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⑤ 제출서류

가. 신청서류

■ 국제학술대회 참가 신청서 1부 (공식초청시 초청장첨부)

- 출장신청서 작성시 재원부분은 사업단에 문의, 상세일정 기재
- 예산 산출 기준: 대학여비규정 기준

■ 항공료 신청 시

- 반드시 연구비 카드 결제 권장 (개인카드 사용 불가능) 카드결제가 불가능한 경우 여행사(항공사)에 계좌이체.
- 항공티켓영수증

■ 학회등록비 신청 시

- 반드시 연구비 카드로 결제
- On-line으로 참가비 결제(연구비카드 결제)가 불가능한 경우: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현장등록비는 연수자 개별통장으로 계좌이체 단체 일괄이체 금지.

■ 발표논문(초록) 사본

■ 학회관련(학회명, 일시, 장소 명시, 학회등록비 명시) 자료

나. 사후제출 서류

■ 해외연수결과보고서 1부 (현장사진 등 학회 관련 사진 첨부)

■ 여권사본(사진 부분, 출입국 직인이 날인된 부분): 연수 후 제출, 본인 출장기간과 맞는지

반드시 확인할 것

- 항공 티켓원본(보딩티켓) 1부
- 학회 프로그램 책자 및 본인 논문 게재 부분 1부
- 학회 등록비 영수증 1부

2. 장기 해외연수 참가 지원

① 선발 대상

가. 박사논문 준비생을 우선적으로 함.

나. 교육프로그램의 필요성 및 연구 성과 활용 가능성 등 계획의 충실히 반영.

② 지원기간: 15일 이상 12개월.

12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추후 협의를 통해 교육연구단장이 결정하여 지급.

③ 지원기준: 왕복 항공료(실비정산), 연수프로그램 비용(수업료, 숙박비(기술사 및 홈스테이 비용), 식비, 교재비등) 실비방식으로 지급. 단 비용의 세부적 기준이 없을 시에는 15일이상 3개월미만의 경우 2,500,000원/월으로 하며, 3개월이상 12개월의 경우 2,000,000원/월 내에서 지원을 한다. 산정기준은 본교 여비규정으로 함.

④ 등록금 문제를 관련부서 담당자와 반드시 상의하여야 하고, 30일이상 장기연수의 경우 지원장학금 지급이 중지된다.

⑤ 제출서류

- 국제협력프로그램 참가 지원서
- 해외연수프로그램 계획서
- 해외연수 소요경비
- BK21 장기 해외연수 신청서
- 본인이 작성하여 행정부서확인과 지도교수, 교육연구단장 서명 필수
- 출장신청서 작성
- 출장신청서 작성시 재원부분은 사업단에 문의
- 예산 산출 기준: 학교 여비 기준 적용
- 성적증명서 1부
- 장기해외연수 Program 협정서 또는 초청장 사본 1부
- 신학기(다음 학기) 등록금 납부 영수증 사본 1부
- 항공료 영수증 (반드시 BK 연구비 카드 결재)
- 보고서: 연수 후 제출
- 여권사본(사진부분, 출입국도장 찍힌 부분): 연수 후 제출, 본인 출장기간과 맞는지 확인, 사정에 의해 당초 신청일에 비해 장기연수기간이 짧아지게 되면 줄어든 해당일 만큼 계산하여 장기연수비를 반납해야 함
-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서, 항공료 지급영수증(Invoice, E-ticket, Boarding Pass)

3. 해외 석학 지원

- ① 지원대상: 벤치마킹 대학 등을 중심으로 해외석학 및 우수 교수 초빙
- ② 장기(6개월 이내) 초빙은 학과의 대학원 교과목 강의 또는 대학원생의 연구지도를 원칙으로 하며, 특별 세미나를 개최시에는 대학 자체규정인 "전문가 활용지침"에 따라서 지원한다.
- ③ 단기(1개월 이내) 초빙은 집중적으로 학생을 지도(세미나, 강연)하거나 공동 연구가 필요한 경우 추진한다
- ④ 지원기준: 500만원범위 이내
- ⑤ 지원항목: 항공료(INVOICE 첨부), 자문료, 숙박비, 식비
- ⑥ 제출서류: 해외교수 초청 계획서, 초청 활용계획서, 세미나 영수증